

평창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	93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11. 10. .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복잡하고 다양화되는 행정수요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처하고, 군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적자원 확보와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,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저명인사를 「평창군 명예군수」로 위촉하여 우리군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과 군수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명예군수 자격요건 (안 제3조)

- 군의 발전에 혁혁하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
- 그 밖에 명예군수로서의 덕망과 인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

나. 임기 (안 제4조)

-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음

다. 직무 (안 제5조)

- 군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제언과 참여, 군수 자문역할 수행
- 군의 발전에 필요한 대외적인 협의활동 및 군정시책 홍보활동
- 그 밖의 군정발전에 필요한 사항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붙임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관계부서협의 : 해당없음

라. 입법예고 : 2011. 8. 29 ~ 9. 19(21일간), 제출된 의견 없음

평창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평창군 명예군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평창군 명예군수(이하 “명예군수”라 한다)란 평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의 발전에 혁혁한 공훈이 있거나 공훈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위촉 및 해촉) ①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관외 인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평창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군수로 위촉할 수 있다.

1. 군의 발전에 혁혁하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
2. 그 밖에 명예군수로서의 덕망과 인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② 군수는 명예군수를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승낙을 받아 위촉한다.

③ 군수는 명예군수가 임기 중에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되거나 건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명예군수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④ 군수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명예군수를 위촉하거나 해촉한 때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.

제4조(임기) 명예군수의 임기는 위촉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명예군수를 위촉한 군수의 임기가 만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.

제5조(직무) 명예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군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제언과 참여
2. 군수 자문역할 수행
3. 군의 발전에 필요한 대외적인 협의활동 및 군정 시책 홍보활동
4. 그 밖의 군정발전에 필요한 사항

제6조(예우 및 권리) ① 명예군수가 군민이 아닐 경우 「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」에 따른 명예군민증서를 수여 받은 것으로 본다.

② 명예군수가 군정을 위한 대내외적 활동을 할 경우에는 군수에 준하는 의전상의 예우를 할 수 있다.

③ 제3조에 따라 위촉된 명예군수는 이 조례에서 허용하는 사항 외에 어떠한 권리도 설정되지 아니한다.

제7조(비밀준수 의무) 명예군수로 재직 중에 취득한 공무상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는 비밀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취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제23조(규칙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